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3조 관련)

위 반 행 위	근거법조문	과태료
1.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1호	100만원
2.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산지전용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1호	100만원
3. 법 제15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산지일시사용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1호	100만원
4. 법 제25조제1항 단서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1호	100만원
5. 법 제25조제2항 후단에 따른 토사채취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1호	100만원
6. 법 제3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채석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1호	100만원
7. 법 제40조제1항 전단(제4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복구설계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이 경우 과태료 금액은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면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법 제57조제1항제2호	
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50만원
나. 1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00만원
다. 1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00만원
라.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500만원
8. 제40조의2제2항(제4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시정통지의 내용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3호	100만원
9. 제44조의2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업무보고 및 자료제출이나 현지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4호	100만원